



-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2. 4.



박왕규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박왕규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
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사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선사문화에 대한 전시, 교육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달서선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먼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, 명칭 및 위치,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, 안 제4조는 선사관의 개관 및 휴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5조는 선사문화 담당팀장을 선사관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, 안 제6조는 입장 및 관람시간에 대하여, 안 제7조는 관람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입장 및 관람금지와 선사관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,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손해배상과 보험가입을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 모집, 편의시설 등 선사관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끝으로, 안 제15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달서선사관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.

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

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1일까지
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,
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
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(박왕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00822036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일자: 2022. 4. 1.

발의자: 박왕규, 박정환, 김화덕,
정창근, 이영빈, 홍복조

1. 제안이유

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사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선사문화에 대한 전시·교육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달서선사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명칭 및 위치,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)
- 나. 선사관의 개관 및 휴관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선사관장을 선사문화 담당팀장으로 하여 선사관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라. 관람시간 및 관람료를 규정함.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, 특별전시에 대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 및 안 제7조)
- 마. 관람금지 및 행위제한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(안 제8조 및 안 제9조)
- 바. 손해배상 및 보험가입에 대해 규정함(안 제10조 및 안 제11조)
- 사.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
- 아.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

자. 선사관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사용·수익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)

차. 달서선사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,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5조에서 안 제18조까지)

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나. 비용추계: 미첨부 대상

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사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선사문화에 대한 전시, 교육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달서 선사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선사관(이하 “선사관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② 선사관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129 일원에 둔다.

제3조(업무 및 기능) 선사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선사문화 자료의 연구 및 전시
2. 주민을 위한 교육·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3. 국내외 박물관 등과 자료 및 정보의 교환
4.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제4조(개관 및 휴관) ① 선사관은 매일 개관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날에 휴관한다.

1. 월요일(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 그 다음날)
2. 1월 1일, 설날(음력 1월 1일) 및 추석(음력 8월 15일)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휴관할 수 있다. 이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조(관리 등) 구청장은 선사관을 운영·관리한다. 다만, 선사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달서구 소속 선사문화 담당팀장을 선사관의 장

으로 임명하여 선사관의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입장 및 관람시간) ① 선사관의 입장 및 관람시간은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

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7조(관람료) ① 선사관은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사관이 특별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.

1.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
2.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사람
3. 만 65세 이상의 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
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
5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6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7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8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9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0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1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12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

13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14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

15. 그 밖에 구청장이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8조(입장 및 관람금지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.

1. 감염병 환자

2.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

3.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

4.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사람

5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6세 이하의 사람

6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이외의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

7.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의 안전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9조(행위의 제한) ① 선사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흡연 또는 음주행위

2.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행위

3. 고성 등 건전한 관람환경을 저해하는 행위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제10조(손해배상) 관람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선사관의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자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「민법」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1조(보험가입) 구청장은 전시품의 도난, 파손, 화재 등에 대비하고 각종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관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·

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회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12조(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) ① 구청장은 선사관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참여자로부터 프로그램 체험료를 징수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자원봉사자 운영) ① 구청장은 선사관 운영·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4조(편의시설 등)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선사관 내부에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편의시설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라 사용·수익 허가할 수 있다.

제15조(위원회 설치) ① 선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선사관 운영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선사관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2. 선사관의 자료 전시 등에 관한 사항
3. 선사관의 특별전시 관람료 및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산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6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달서구 소속 선사관 업무담당 국장
2. 선사관 운영 등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선사문화와 관련 있는 문화계 지역 인사
4. 그 밖에 구청장이 선사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7조(위원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까지만 연임 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18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,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~4. <생략>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가. <생략>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다. <생략>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(이하 생략)